

투자위험등급 :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MF 제 2 호[국공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MF 제 2 호[국공채]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MF 제2호[국공채]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3. 판매 회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 일 : 2013년 8월 2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8월 2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2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 사항 없음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사항	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4
3. 모집예정금액	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4
5. 인수에 관한 사항	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5
4. 집합투자업자	5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6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7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0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4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5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6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8
1. 재무정보	1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22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23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23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24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25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25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6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6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28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8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30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31
붙임. 용어풀이	32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MF 제2호[국공채]
금융투자협회 코드	3702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 (MMF)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해당 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2조좌

-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MF 제2호[국공채]
금융투자협회 코드	3702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3.05.16	최초 설정
2009.05.03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명칭 변경 [PCA 국공채 신종 MMF투자신탁 제A-2호 => PCA 신종 MMF 제A-2호[국공채]]
2009.09.10	시행령 개정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제한 등 관련 주요 조항 변경
2010.06.14	과세 조항 변경
2011.06.28	-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PCA투자신탁운용 -> PCA자산운용)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임의해지 및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등
2012.02.14	- 집합투자업자 사명 및 펀드 명칭 변경 · 사명 : PCA자산운용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 펀드명: PCA 신종 MMF 제A-2호[국공채] ->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MF 제2호[국공채]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05.31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3.08.28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5층 (대표전화 : 02-2126-3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3.08.01 현재)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자산규모	
문성빈	1971년생	이사	9개	1조 4,176억	<주요 운용경력> 채권펀드 운용 - 97.01~02.04 삼성생명 - 02.04~11.12 삼성자산운용 - 12.01~현재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코리아 <이력>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BA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3년 동안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

<책임운용역>

책임운용역	운용기간
유제석	2008.07.31 ~ 2012.02.13
문성빈	2012.02.14 ~ 현재

※ 2013년 8월 28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부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운용기간
임태혁	2012.02.14 ~ 2013.05.30
이진형	2013.05.31 ~ 2013.08.27

※ 2013년 8월 28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 추가형, 개방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령 제119조1항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및 해당 법인에의 예치(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함),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를 포함. 이하 “국공채 등”이라 함]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는 잔존만기가 짧은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공채 등의 단기금융상품은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채무불이행, 파산, 신용등급 하락의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과 시중실세금리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 내역
------	---------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법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으로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를 포함한다)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 채수 및 채도 8. 법 시행령제26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기의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채무증권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 등급”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③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 등급(제2항제 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 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종목투자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상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의 투자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 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3 항제 5 호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 거래상대방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금액(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 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증권의 대여 및 차입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가중평균 잔존만기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90일을 초과하는 행위	
구조화된 자산	- 자신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 상기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령 제119조1항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및 해당 법인에의 예치(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함),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를 포함. 이하 “국공채 등”이라 함]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운용 전략]

◆ 단기금융투자신탁의 특성에 충실한 체계적인 운용 프로세스

- 안정된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한 편입자산의 만기구조 설계
- 국공채 등 유동성이 높고 신용위험이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한 펀드운용
- 최상위 신용등급의 은행채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률 제고

◆ 포트폴리오 구성기준

- 국공채 등 중심의 투자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 투자신탁의 만기를 고려한 편입자산의 만기구조 설계
- 최상위 신용등급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동성자산(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및 단기대출 등) 운용

※ 비교지수(벤치마크)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만으로 구성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산출, 발표되는 비교지수가 없어 현재 별도의 비교지수(벤치마크)를 두고 있지 않지만,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당사는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근거한 자체 크레딧 유니버스(신용자산 투자 후보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기금융상품의 특성상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시장 금리 예측을 통한 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펀드의 운용 목표에 부합하도록 적극 관리합니다. 또한, 정기적, 비정기적 신용분석을 통해 신용사건 및 등급하락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편입을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급격한 금리 변동 및 기타 위험 징후 발견 시 자산 매도를 통한 해당 자산의 비중축소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가중평균 잔존만기의 축소, 가치하락 가능성이 있는 종목 등에 대한 추가 매수 제한 등으로 향후 금리 변동 시 추가적으로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 해당 사항 없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의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

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신탁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무증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시 가격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발행자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현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보다 는 국내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 제한 및 환매연기	대량환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	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부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식에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5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투자신탁 등 보다 낮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단기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이자율 변동 위험과 발행자 신용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 등급	위험 정도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주식,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실물자산 등 특별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소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주식,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최소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가운데 차익거래 또는 시장중립적인 운용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외국통화 표시의 투기등급(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에 최대 40% 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국내 투기등급 채권, 외국통화 표시의 투자적격 회사채 및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발행한 외국통화 표시의 국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원금 보존을 추구하도록 구조화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 국내 투자적격등급 채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외국통화 표시의 국채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 국내 국공채에 최소 5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등급을 기초로 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편입비용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 상기 위험등급 분류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내부 기준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으로 판매 회사가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별도로 정한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은 개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법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D	D+1	D+2
자금납입일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5시 경과후)		기준가격 적용일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D	D+1	D+2
환매청구일 (5시 이전)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청구일 (5시 경과후)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다) 판매회사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입·환매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입 및 환매가 가능합니다.

※ 매입 및 환매의 당일 결제

- 주식 등 다른 증권(결제소요 2일이상)의 매매와 연계하여 MMF계좌의 입출금 예약이 있는 경우
- 유희자금을 MMF에 자동적으로 운용하는 계좌에서 급여입금, 공과금 납부 등 주기적으로 입출금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 환매의 당일 결제

- 판매회사가 고유자금으로 일정한도(MMF별 판매규모의 5%와 100억중 큰 금액)내에서 MMF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환매하는 경우
단, 판매회사 사정에 따라서 당일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매입 및 환매와 관련한 예외 사항은 판매회사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 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법 제140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단,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자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수익자의 자격	제한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0925 %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연 0.26 %	
신탁업자보수	연 0.03 %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15 %	
기타비용 ¹⁾	연 0.0065%	사유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연 0.404%	-
증권거래비용 ²⁾	연 0.0031%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3.05.15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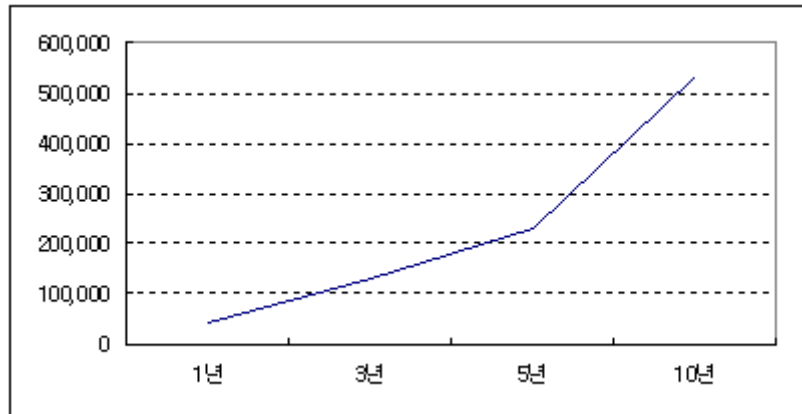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3.05.1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41,410	130,752	229,904	531,037

주1)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을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10기 및 제9기는 안전회계법인으로부터, 제8기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재무정보	제 10 기 20130515	제 9 기 20120515	제 8 기 20110515
I. 운용자산	65,922,304,713	78,294,869,012	64,557,994,710
증권	35,283,547,056	52,857,966,137	45,966,194,181
현금 및 예치금	21,138,757,657	20,436,902,875	18,591,800,529
기타운용자산	9,500,000,000	5,000,000,000	
II. 기타자산	280,270,972	710,867,788	1,139,574,136
자산총계	66,202,575,685	79,005,736,800	65,697,568,846
III. 기타부채	72,303,900	85,083,011	65,714,719
부채총계	72,303,900	85,083,011	65,714,719
I. 원본	64,457,814,517	76,501,531,128	64,036,265,502
II. 수익조정금	-493,058,291	-240,812,154	144,682,813
III. 이익잉여금	2,165,515,559	2,659,934,815	1,450,905,812
자본총계	66,130,271,785	78,920,653,789	65,631,854,127
I. 운용수익	2,507,189,165	3,007,042,892	1,688,462,092
이자수익	2,623,138,175	3,083,975,808	2,073,920,316
매매/평가차익(손)	-274,167,535	-212,471,342	-385,458,224
기타이익	158,218,525	135,538,426	
II. 운용비용	341,673,606	347,108,077	237,556,280
관련회사보수	333,654,176	340,158,697	233,243,360
기타비용	8,019,430	6,949,380	4,312,920
III. 당기 순이익	2,165,515,559	2,659,934,815	1,450,905,812
* 매매회전율	0	0	0

※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대차대조표	제 10 기 20130515	제 9 기 20120515	제 8 기 20110515
I. 운용자산	65,922,304,713	78,294,869,012	64,557,994,710
(1) 현금 및 예치금	21,138,757,657	20,436,902,875	18,591,800,529
현금 및 현금성자산	21,138,757,657	20,436,902,875	18,591,800,529
(2) 대출채권	9,500,000,000	5,000,000,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9,500,000,000	5,000,000,000	
(3) 유가증권	35,283,547,056	52,857,966,137	45,966,194,181
채무증권	35,283,547,056	52,857,966,137	45,966,194,181
II. 기타자산	280,270,972	710,867,788	1,139,574,136
미수이자	138,802,344	216,966,739	373,943,076
선급비용	140,786,711	493,435,296	765,631,060
기타자산	681,917	465,753	
자산총계 (I + II)	66,202,575,685	79,005,736,800	65,697,568,846
II. 기타부채	72,303,900	85,083,011	65,714,719
수수료미지급금	71,995,550	84,850,511	65,526,059
기타미지급금	308,350	232,500	188,660
부채총계 (I + II)	72,303,900	85,083,011	65,714,719
I. 원본	64,457,814,517	76,501,531,128	64,036,265,502
원본액	64,457,814,517	76,501,531,128	64,036,265,502
II. 이익잉여금	2,165,515,559	2,659,934,815	1,450,905,812
당기순이익	2,165,515,559	2,659,934,815	1,450,905,812
III. 설정조정금	2,034,880,357	2,835,204,223	2,197,396,436
IV. 해지조정금	-2,527,938,648	-3,076,016,377	-2,052,713,623
자본총계 (I + II + III + IV)	66,130,271,785	78,920,653,789	65,631,854,127
* 총좌수	64,457,814,517	76,501,531,128	64,036,265,502
* 기준가격	1,025.95	1,031.62	1,024.92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제 10 기 20120516-20130515	제 9 기 20110516-20120515	제 8 기 20100516-20110515
I. 운용수익	2,507,189,165	3,007,042,892	1,688,462,092
(1) 투자수익	2,781,356,700	3,219,514,234	2,073,920,316
이자수익	2,623,138,175	3,083,975,808	2,073,920,316
기타이익	158,218,525	135,538,426	
(2) 매매차익 과 평가차익	2,601,901	10,729,554	6,114,006
채무증권매매차익	2,550,350	10,728,529	5,389,893
유동자산매매차익	51,551	1,025	724,113
(3) 매매차손 과 평가차손	276,769,436	223,200,896	391,572,230
채무증권매매차손	275,743,211	222,718,221	388,170,842
유동자산매매차손	1,026,225	482,675	3,401,388
II. 운용비용	341,673,606	347,108,077	237,556,280
운용수수료	77,642,796	79,156,427	54,276,757
판매수수료	218,239,212	222,493,741	152,561,697
수탁수수료	25,181,446	25,672,353	17,603,272
사무수탁수수료	12,590,722	12,836,176	8,801,634
감사인보수비	2,200,000	2,200,000	2,200,000
기타비용	5,819,430	4,749,380	2,112,920
III. 당기순이익 (I - II)	2,165,515,559	2,659,934,815	1,450,905,812
* 총좌수	64,457,814,517	76,501,531,128	64,036,265,502
* 당기순이익 (좌당 or 1000좌당)	33.60	34.77	22.6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좌,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이익분배에 따른 재투자분	
			설정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100516 - 20110515	55,384,371,057	55,384,371,057	162,586,265,262	164,783,661,698	155,068,107,920	157,120,821,543	64,036,265,502	64,180,948,315	1,133,737,103	1,133,737,103
20110516 - 20120515	64,036,265,502	64,036,265,502	205,142,445,899	207,977,650,122	194,165,902,678	197,241,919,055	76,501,531,128	76,260,718,974	1,488,722,405	1,488,722,405
20120516 - 20130515	76,501,531,128	76,501,531,128	176,384,075,893	178,418,956,250	190,635,710,047	193,163,648,695	64,457,814,517	63,964,756,226	2,207,917,543	2,207,917,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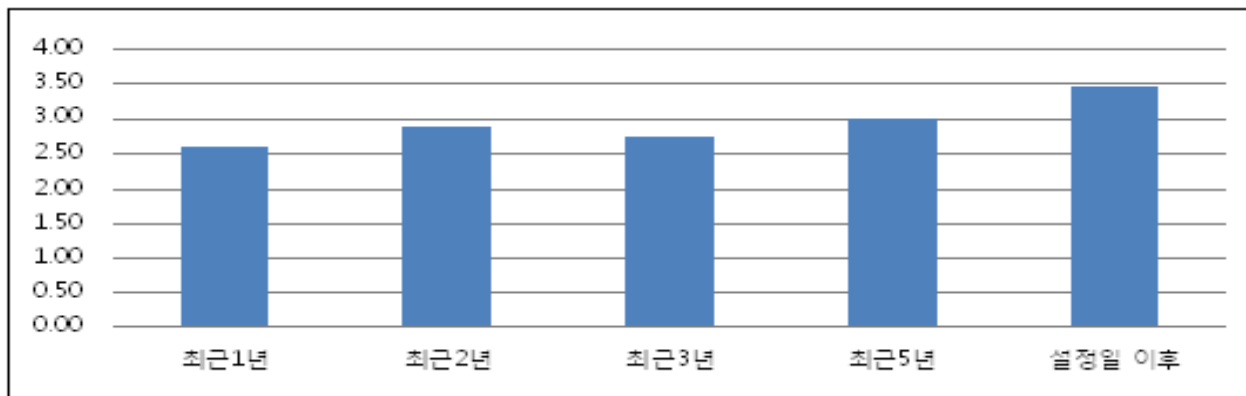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연도	최근 1 년 2012.05.16 ~ 2013.05.15	최근 2 년 2011.05.16 ~ 2013.05.15	최근 3 년 2010.05.16 ~ 2013.05.15	최근 5 년 2008.05.16 ~ 2013.05.15	설정일 이후 2003.05.16 ~ 2013.05.15
투자신탁	2.59 %	2.88 %	2.75 %	3.00 %	3.45 %
비교지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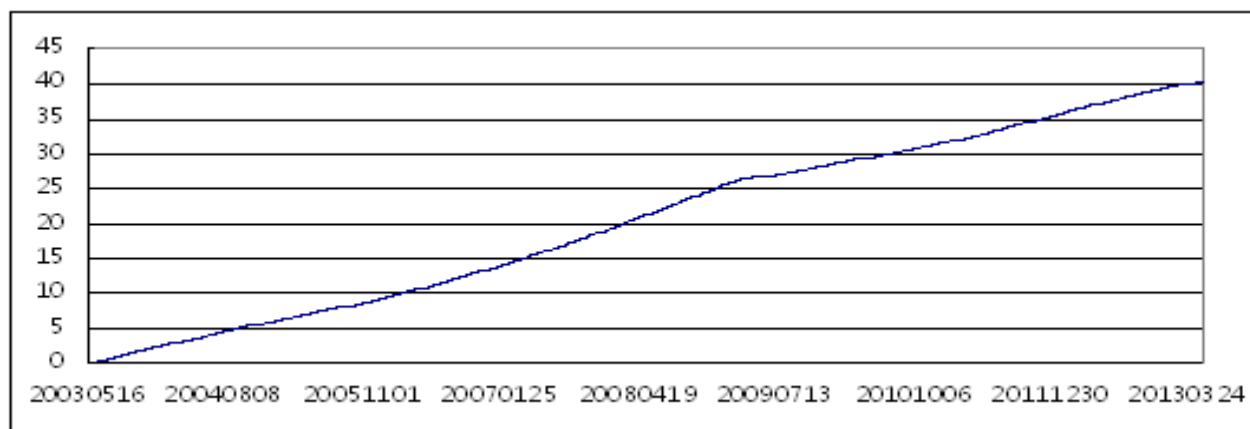
※ 비교지수(벤치마크)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연도	최근 1 년차 2012.05.16 ~ 2013.05.15	최근 2 년차 2011.05.16 ~ 2012.05.15	최근 3 년차 2010.05.16 ~ 2011.05.15	최근 4 년차 2009.05.16 ~ 2010.05.15	최근 5 년차 2008.05.16 ~ 2009.05.15
투자신탁	2.59 %	3.16 %	2.49 %	2.27 %	4.49 %
비교지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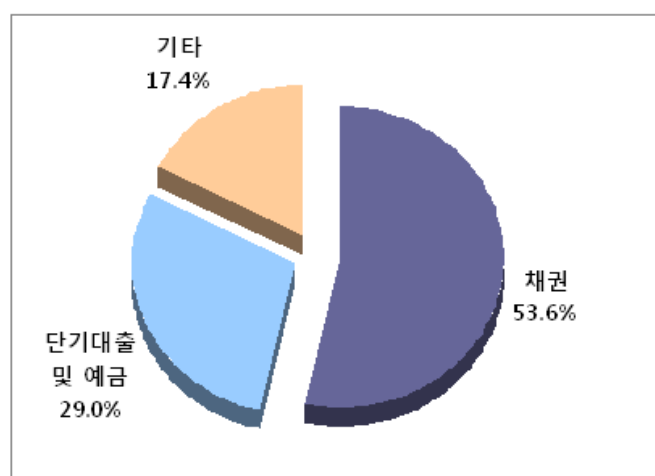
※ 비교지수(벤치마크)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비교지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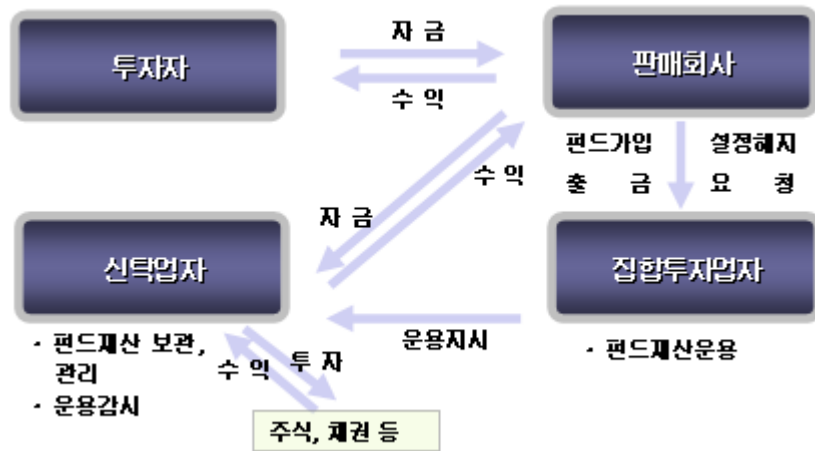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3.05.15 현재)

(단위 : 백만원)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머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한국 원	0 (0.00)	35,475 (53.5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9,227 (29.04)	11,501 (17.37)	66,203 (100.00)
합계	0 (0.00)	35,475 (53.5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9,227 (29.04)	11,501 (17.37)	66,203 (100.00)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5층 [연락처 : 02-2126-3500,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2.07 제로인 2002년 상반기 결산 채권형 1위 운용사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변경 2002.11 PCA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 변경 2004.07 제로인 선정 2004년 상반기 주식형 1위 운용사 2005.01 한경비즈니스 선정 2004년 결산 베스트 주식형펀드 운용사 부문 2위 2005.01 제로인 선정 2004년 결산 주식형펀드 운용사부문 2위 2005.12 머니투데이 베스트 펀드상 수상 -주식형펀드 베스트 운용사 부문 2006.02 2006 Asia Asset Management Awards수상 (Best of Best Awards - 한국 주식형(3년) 베스트 운용사 선정 Best of Best Country Awards - PCA 뉴실크로드펀드 Korea부문 Most Innovative Product로 선정) 2008.12 제로인 선정 2008년 Fund Award 수상 - 아시아태평양주식형 및 중국주식형 펀드 2009.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스탠다드 플러스 증권 펀드(국내 채권형 부문) 2010.07 PCA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10.12 머니투데이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PCA China Dragon A Share 증권 펀드(해외 주식형 부문) 2012.0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로 사명 변경 2012.03 모닝스타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수상 -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증권 펀드(국내 대형주 부문)
자본금	150억원
주요주주현황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 100%

※ 영국 프루덴셜 그룹은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보험·자산운용 및 금융서비스를 직접 혹은 자회사와 계열사 등을 통하여 지난 160년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프루덴셜 (Prudential Financial, Inc.)과는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3.03	2012.03	2011.03	계정과목	2013.03	2012.03	2011.03
자산총계	28,915	29,254	28,533	1. 영업수익	18,773	20,066	20,236
1. 현금 및 예치금	16,138	22,566	22,078	2. 영업비용	13,582	14,252	13,920
2. 유가증권	0	-	-	3. 영업이익	5,192	5,814	6,316
3. 대출채권	1,500	200	400	4. 영업외수익	12	0	0
4. 유형자산	330	369	333	5. 영업외비용	34	4	6
5. 기타자산	10,947	6,119	5,722	6. 경상이익	5,169	5,810	6,310
			-	7. 특별이익	0	0	0
			-	8. 특별손실	0	0	0
부채 및 자본총계	28,915	29,254	28,533	9. 법인세차감전	5,169	5,810	6,310
1. 예수부채	529	570	617	순이익			
2. 기타부채	4,506	4,949	4,188	10. 법인세비용	1,147	1,477	1,568
3. 부채총계	5,035	5,519	4,805	11. 당기순이익	4,022	4,333	4,742
4. 자본금	15,000	15,000	15,000				
5. 이익잉여금	8,745	8,622	8,728				
6. 자본잉여금	135	113					
7. 자본총계	23,880	23,735	23,728				

라. 운용자산 규모 (2013. 06. 30 기준, 단위: 억좌)

종류	증권					특별자산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18,098	4,609	13,098	1,529	7,050	96	6,583	51,06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연락처 : 1588-9999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함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등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 내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HSBC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6층 연락처: 02-3771-98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hsbc.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위반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연락처: 02-399-335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번지 연락처 : 02-398-390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215-1400
회사 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나.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2) (1)의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investments.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제247조제5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investments.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정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

	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용 어	내 용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청구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코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뿐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집합투자기구의 잔존 집합투자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합니다.
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업자 보수, 신탁업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규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집합투자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	집합투자기구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재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부동산 관련 주식 또는 채권 및 특별 자산을 제외하며, 제외대상 자산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매입신청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기한까지 환매가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단기간 이내 또는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익금 또는 환매대금의 일정 수준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자산을 사들이게 되며, 운용기간 중에 환율이 하락(원화약세)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선물환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F 제2호[국공채]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이스트스프링 개인 신종 MF 제2호[국공채]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